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

2024년 8월 9일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내규 제103호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(2024. 8. 9.)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승진 후보자 최저 교육훈련 이수 시간은 시행일 이전의 해당 직급
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을 소급하여 반영한다.

[별표 6]

승진후보자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(제35조제2항관련)

구 분		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	비 고
전문 교육	직무교육, 외국어교육, 정보화교육 (공단이 지정한 온라인 교육 포함)	55시간	
자체 교육	조회, 봉사활동 등 (시청 행사 및 교육활동 포함)		

※ 직무교육은 필수적으로 15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.

-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-

□ 개정이유

-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후 전문·자체 교육 미이수자 다수 발생
- 승진 소요 연수 도래(2025년 8월) 전 교육 이수 시간 변경 필요
- 승진후보자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조정으로 전환자 승진기회 부여

□ 주요내용

- 별표 6의 승진후보자 최저 교육훈련 이수 시간 통합 및 온라인 교육 포함 실시